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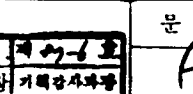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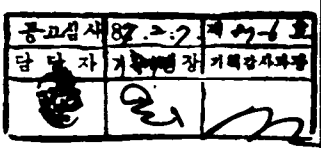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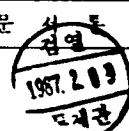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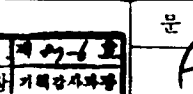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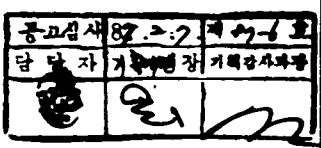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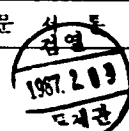


강원도 강릉시 강동구 강동1리 175-1번지 35,416㎡

분류기호 문서번호		기안용지 부령30920-419 (전화: 478-2286)		사명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순영구, 10.5.3.1.		구경장		석관	
수신처 보존기간 1년		전질			
시정일자 87.2.		10.16			
부경장 도시장 시주무과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시정일자 이계종 (공무원)		발송인			
관안감조		시장			
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 (주택개발 제개발 사업에 구역)					
(제1안) 내부검제					
1. 건설부고시 제 470호 (73. 12. 1) 토 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62호 (85. 3. 13) 토 주택개발 제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가락 제 1구역 에 대하여 도시 제개발법 제 4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아택내용과 같이 준 공경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 (제 2안) 과					
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칭 :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발 제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 강동구 가락동 175-1번지 722필지 35,416㎡					

1503-252-1.9.1.9

194mm x 268mm, 인쇄용지 2급
 가 40-41 1988. 7. 6.

강원도 강릉시 강동구 강동1리 175-1번지 35,416㎡

분류기호 문서번호		기안용지 부령30920-41 (전화: 478-2286)		사명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순영구, 10.5.3.1.		구경장		석관	
수신처 보존기간 1년		전질			
시정일자 87. 2.		10.16			
부경장 도시장 시주무과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시정일자 이계종 (공무원)		발송인			
관안감조		시정일자			
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 (주택개발 제개발 사업에 구역)					
(제1안) 내부검제					
1. 건설부고시 제 470호 (73. 12. 1) 토 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62호 (85. 3. 13) 토 주택개발 제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가락 제 1구역 에 대하여 도시 제개발법 제 4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아택내용과 같이 준 공경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 (제 2안) 과					
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칭 :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발 제개발사업					
나. 사업구역 : 강동구 가락동 175-1번지 722필지 35,416㎡					

다. 시행자 :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발 지계발조합
마. 시행기간 : 85. 3. 13 - 87. 3. 12 B- 공사완료일 : 86. 12. 6
바. 사업시행내역 1) 기존 건축물 철거 : 603동 (유어가 4동, 무어가 599동) 2) 주택건설 : 15층 아파트 7동 838가구 · 19평형 - 409가구, 24평형 - 219가구 39평형 - 90가구, 45평형 - 120가구 3) 부대복역시설 : 상가 1동 3,623.64㎡ 유서원 1동 831.52㎡ 결재 1987. 7. 07 노인정 1동 143㎡ 4) 사업비 : 284억원 5) 시공자 : (주) 우성건설 공.
(제 2 안)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지계발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47호 (73. 12. 1) 로 구원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호 (85. 2. 13) 로 사업시행인가된 가락 제 1구역 택지개발지구

제계발법 제 4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끝마쳤기 같은 법 제 48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제계발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1987. 2.

서울특별시

공고요격

가. 사업명칭 : 가락 제 1구위 주택계량 제계발사업

나. 사업구역 : 강동구 가락동 175-1 외 722필지 35,456㎡

다. 시행자 : 가락 제 1구위 주택계량 제계발조합

라. 시행기간 : 85. 3. 13 - 87. 3. 12

마. 사업시행내역

1) 기존 건축물 철거 : 603 동

2) 주택건립 : 15층 아파트 7동 838가구

3) 부대복합시설 : 상가 1동 3,623.64㎡

노인정 1동 143㎡

기타 1동 837.52㎡

4) 사업비 : 284억원

5) 시공자 : (주) 우성건설

(제 3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1. 우리시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발 제계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내용의 관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본 사본 2 부. 끝.	
(제 4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개발국장	
제목 : 제계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 (보고)	
1. 우리시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발 제계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고 같은 법	
제 4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리내용을 보고 합니다.	
첨부 : 공고본사본 1 부. 끝.	
(2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발신 : 구청장
참조 : 주택개발과장	
제목 : 제계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 보고	

<p>1. 86. 12. 6 준공검사를 위한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p>
<p>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 하</p>
<p>였기 보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p>
<p>첨부 : 공고문 사본 1 부. 끝.</p>
<p>(제 6 안)</p>
<p>수신 : 가락 제 1구역 조합장 은수연 귀하</p>
<p>제목 : 같은 건 (통보)</p>
<p>1. 86. 12. 6 준공검사를 위한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p>
<p>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 하</p>
<p>였기 통보 하오니 관계규정에 의한 검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첨부 : 공고문 사본 1 부. 끝. 부장상</p>
<p>(제 7 안)</p>
<p>수신 : 서울특별시청</p>
<p>장르 : 시민과장</p>
<p>제목 : 시장직인 남인의뢰</p>
<p>1. 86. 12. 6 준공검사를 위한 가락 제 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p>
<p>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 하</p>
<p>기 위하여 시장직인 남인을 의뢰합니다.</p>

첨부 1. 관보 게재 의뢰공문 1 부.

2. 저개발사업에 관한 공산완료 공고 보고서 1 부.

3. 공고문 사본

4. 저개발사업에 관한 공산완료 공고 통보서 1 부. 끝.